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 
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 
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양승이 의원 발의】



2025. 6. 13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

##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528호로 2025년 5월 30일 양송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자율소방대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5.6.3.~2025.6.10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(2016.11.30.) 및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(2017.1.15.)<sup>1)</sup>를 계기로 전통시장 소화기 관리 실태 확인 및 화재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「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위한 계획」을 수립함. 또한 2024년 소방청에서는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화를 위해 「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」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구(區)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·구성·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힘쓰고자 제정됨.

### 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#### 가. 조례안의 체계

1) 대구 서문시장 화재(2016.11.30.): 679개의 점포가 소실되어 46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  
여수 수산시장 화재(2017.1.15.): 125개 점포가 소실되어 16억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

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는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안 제5조는 자율소방대 활동을 평가하여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 규정을 담아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	제 명	내 용
제1조	목적	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제2조	정의	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자율소방대의 용어 정의
제3조	구청장의 책무	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
제4조	자율소방대 지원	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예산의 범위 내 지원가능 (순찰, 안전점검, 홍보, 교육, 초기대응 장비, 물품 등)
제5조	자율소방대 평가	활동 평가 후 지원 내용 조정 가능
제6조	협력체계 구축	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
제7조	표창	초기대응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대원에게 표창

## ○ 종합의견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2)에 의거 지방

### 2)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(이하 “화재예방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화재 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예방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의의를 찾을 수 있음.

-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4항<sup>3)</sup>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함.
- 자율소방대는 시장 상인으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써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본 조례 제정으로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운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화재 발생 시, 전통시장의 구조와 환경에 익숙한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통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---

3) 제43조(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# 참 고 자 료

##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###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(이하 “화재예방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43조(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
-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 1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
  2.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·보급
  3.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 4.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  5.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
  6.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